

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관리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번호	
------	--

제출일자 2013. 10. .

제 출 자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지방공공시설로 운영하는 승마장 및 자연휴양림 시설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 안으로서, 수수료를 실정에 맞게 규정 보완하고자 함.

(안 별표 2 승마장 시설 이용료 비교 제6호)

2. 수정 주요내용

- 옥성자연휴양림 숙박객(숲속의 집 객실정원 기준내 사용자에게 한한다)에게는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.
 - 가. 1일 기승 이용료의 50% 감면
 - 나. 마차체험 이용료의 50% 감면
 - 다. 승마체험 이용료의 50% 감면

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관리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관리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별표 2 이용자 구분란 중 “마차체험(1인당)”을 “마차체험, 승마체험(1인당)”으로 한다.

별표 2 중 비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육성자연휴양림 숙박객(숲속의 집 객실정원 기준내 사용자에 한한다)
에게는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.
 - 가. 1일 기승 이용료의 50% 감면
 - 나. 마차체험 이용료의 50% 감면
 - 다. 승마체험 이용료의 50% 감면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																
[별표 2] 승마장 시설 이용료(제29조 관련) <table><tr><th>이용자 구분</th><th>이용료 (1명 기준)</th><th>이용범위</th><th>비고</th></tr><tr><td>마차체험(1인당)</td><td>성인 : 5,000원 청소년 : 4,000원 어린이 : 3,000원</td><td>승마장 주변</td><td></td></tr></table> 1. ~ 5. 생략 <신설>	이용자 구분	이용료 (1명 기준)	이용범위	비고	마차체험(1인당)	성인 : 5,000원 청소년 : 4,000원 어린이 : 3,000원	승마장 주변		[별표 2] 승마장 시설 이용료(제29조 관련) <table><tr><th>이용자 구분</th><th>이용료 (1명 기준)</th><th>이용범위</th><th>비고</th></tr><tr><td>마차체험, 승마체험(1인당)</td><td>성인 : 5,000원 청소년 : 4,000원 어린이 : 3,000원</td><td>승마장 주변</td><td></td></tr></table> 1. ~ 5. (현행과 같음.) 6. <u>옥성자연휴양림 숙박객(숲속의 집 사용자에 한한다)에게는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.</u> 가. 1일 기승 이용료의 50% 감면 나. 마차체험 이용료의 전액 감면 다. 승마체험 이용료의 전액 감면	이용자 구분	이용료 (1명 기준)	이용범위	비고	마차체험, 승마체험(1인당)	성인 : 5,000원 청소년 : 4,000원 어린이 : 3,000원	승마장 주변		[별표 2] 개정안과 같음 1. ~ 5. 생략 6. <u>옥성자연휴양림 숙박객(숲속의 집 객실정원 기준내 사용자에 한한다)에게는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.</u> 가. 1일 기승 이용료의 50% 감면 나. 마차체험 이용료의 50% 감면 다. 승마체험 이용료의 50% 감면
이용자 구분	이용료 (1명 기준)	이용범위	비고															
마차체험(1인당)	성인 : 5,000원 청소년 : 4,000원 어린이 : 3,000원	승마장 주변																
이용자 구분	이용료 (1명 기준)	이용범위	비고															
마차체험, 승마체험(1인당)	성인 : 5,000원 청소년 : 4,000원 어린이 : 3,000원	승마장 주변																

구미시 조례 제 호

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관리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관리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 이용자 구분란 중 “마차체험(1인당)”을 “마차체험, 승마체험(1인당)”으로 한다.

별표 2 중 비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육성자연휴양림 숙박객(숲속의 집 객실정원 기준내 사용자에 한한다)
에게는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.
- 가. 1일 기승 이용료의 50% 감면
 - 나. 마차체험 이용료의 50% 감면
 - 다. 승마체험 이용료의 50% 감면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